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전거등 앞지르기 방법 개선〉

■ 문대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701호)

2025. 8.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대림의원 등 10인
2. 제안연월일 : 2025. 6. 10.
3. 회부연월일 : 2025.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는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으로만 통행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자전거등은 앞지르기 시 다른 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를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나, 이로 인해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에는 오히려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전거등의 앞지르기 방법에서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우측 앞지르기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바로잡고, 자전거등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다른 차의 경우와 같이 좌측으로만 통행하도록 하여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생략)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② ----- -----차(자전거등은 제외한다)-----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차의 운전자가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자전거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앞차의 우측으로도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는 자전거등이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특성상 서행하거나 정지한 자동차 등을 안전하게 앞지르기 위해 마련된 규정임¹⁾

<현행 앞지르기 방향>

앞지르기 당하는 차 앞지르기 하는 차	자전거등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차 (자전거등 제외)
자전거등 (자전거 + 개인형 이동장치)	좌·우측 모두 가능 *개정안: 좌측만 가능(우측 금지)	좌·우측 모두 가능
차 (자전거등 제외)	좌측만 가능	좌측만 가능

그런데 현행법상 자전거등이 "다른 차"를 앞지를 때 우측통행이 허용되므로,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에서도 좌측과 우측 모두 가능한 상황이 되어 자전거등 운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 특히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시 좌측과 우측 앞지르기가 혼재되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등 간 앞지르기를 좌측으로만 제한함으로써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자전거등 운전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 대상을 "자전거등을 제외한 다른 차"로 한정하여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는 좌측으로만 하도록

1)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2) 이와 관련하여 21대 국회에서도 위성곤의원이 동일한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9930호, 2023.02.09.)

명확히 함으로써 자전거등 운전자의 혼란을 해소하고 교통안전을 제고 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또한 현행법이 자전거 등은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전거등 간 앞지르기를 좌측으로 통일하는 것이 법체계에 부합하고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이 자전거등의 우측 앞지르기를 허용한 것은 속도가 비교적 느린 자전거등의 특성상 좌측 앞지르기 방법만으로는 후방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 우려가 높기 때문임. 개정안에 따라 자전거등 간 앞지르기를 좌측으로만 제한할 경우에도 좌측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하게 되는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또한, 자전거 도로 및 자전거 전용차로의 폭원이 협소한 경우 자전거등 간의 좌측 앞지르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전거등 간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개정안 시행 시 현행 자전거 인프라의 물리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경찰청은 개정안 시행 시 자전거등 간의 앞지르기 혼란은 감소할 수 있으나 좌측 후방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이 여전히 상존한다는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344